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제2048호
다. 제출일자: 2024.8.12.
라. 회부일자: 2024.8.14.

2. 제 안 사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평가 예외 대상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4조제2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경우 평가서 검토 의견 통보 기한 명시에서 제외함(안 제15조제1항).

- 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 마.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사항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 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
- 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 차.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 카.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가) 개선의견: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토록 개정

(나) 조치내용: 미반영, 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 필요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의견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5.30.~6.19.) 결과: 의견 있음(반영)

(가) 제출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일 경우
조례상 평가서 검토 기간 수정 필요

(나) 조치내용: 반영, 제15조제1항 검토기간 후단에 단서 신설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4조	• 재난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4조	• 타법 개정(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5조	•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결과 통보 기한 연장
안 제17조	• 재협의 요청 대상에서 사업자 제외
안 제18조	• 환경보전방안 제출 규정 신설(5일 이내, 승인기관장→시장)
안 제21조	• 재난·안전관리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에 사전공사 가능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2조, 제24조, 제31조	• 위원회 기능에 자문 추가, 심의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 추가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안 제25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한 사업자 재량권 부여
안 제27조	• 협의절차 면제 특례 대상에 재협의 대상도 포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8조	•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에게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나. 검토의견

1) 상위법 등 개정사항 반영

- 안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¹⁾으로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1)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4호,(시행 2025.2.21.)

하는 것이고, 안 제21조제2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에 사전공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4조제2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해진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7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절차 면제 특례 대상에 재협의 대상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조례 운용상 미비점 보완

-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내용’²⁾ 통보 기한(28일 이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을 제외하려는 것임.

즉, 현행 조례상 시장은 ‘협의내용’을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나,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기한³⁾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통합심의 대상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⁴⁾.

- 안 제18조제3항은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

2) 협의내용: 평가서 검토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3) “양동구역 제4-2·7 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24.4.26.)부터 통합심의 개최(‘24.7.2.)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음.

4) 통합심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에 한정되며, 선행절차인 초안 단계(주민의견 수렴) 및 후속절차(보완서 작성 등)는 기존과 같게 진행됨.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자에게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제출 기한을 5일로 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13조의 평가서 본안 협의 요청 기한과 같게 설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5조(환경영향평가작성계획서 제출)는 심의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작성계획서 제출에 대한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임.

작성계획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평가범위와 항목 등을 정하는 서류인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작성계획서 제출 대신 서울시에서 고시한 심의 기준⁵⁾을 적용하고 있음.

즉, 안 제25조는 심의 기준 준수⁶⁾가 어려운 사업, 특히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 적용 대신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조례 제20조의 협의절차에 따르면,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그 반영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는 협의절차 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22.8.4.)

6) 심의기준: 생태면적률 35%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이상 등

3) 위원회 관련 규정 수정

- 안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항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역할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심의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심의위원(자문위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2조제7항과 안 제24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전년도에 수립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위원회 개선계획⁷⁾'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31조는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 수당과 별도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안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7) '23.4.25., 기후환경정책과-6072